

2025년 3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전용 보고

□ 관련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□ 전용 내역 : 총 1건, 5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과목		예산현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현액
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외국인이민담당관								
다함께 살기좋은 글로벌 도시 조성	글로벌 인재발굴·유치 및 안착 지원	외국인 비자 등 제도개선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201-01)	191,200	-	5,000	186,200
	글로벌도시 서울 인지도 향상 및 정착기반 조성	외국인학교 지원 육성	일반운영비 (201)	공공운영비 (201-02)	3,178	5,000	-	8,178

□ 전용 사유

- 외국인학교 공유재산 공제회비를 市가 직접 납부하기 위하여 전용
 - 그간 사용기관(드와이트외국인학교)에서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기존 보험 만료에 따라 개정된 공유재산법에 맞게 가입 주체를 변경함
 -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 외에도 풍수해, 지진위험 등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 안전관리 철저 도모

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>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